

KOREA

건축사단체 통합에 관한 공청회

건축과 건축사의 미래를 위하여

Public Forum for Architects Group Unity

ARCHITECTS

Contents

건축사 단체통합 추진 현황

가. 건축사단체 현황	92
나. 통합방침	92
다. 단체통합 관련 주요 추진경과	92
라. 대표자회의 및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명단	94

단체 통합에 관한 글 모음

건축3단체 통합에 즈음하여	95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새 희망과 새 비람을 일으킬 것!	96
건축사 단체 통합은 사건이 아닌 의무!	96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과정	97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할 때"	98
400년의 송사	99
건축 3 단체 통합의 변수	99

[별첨자료]

단체 통합에 관한 Q&A	101
---------------------	-----

건축사 단체통합 추진 현황

가. 건축사단체 현황

구 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설립 근거	건축사법 제31조 (법률 제1536호: '63.12.16 공포) ※ '65.10.23 창립총회 개최 ('65.12.3 정관 제정·인가)	문예진흥법 제7조 ※ 1962년 설립인가	민법 32조, 국토부장관 및 철도청장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직	본회, 시·도 건축사회(16), 지역건축사회(107)	본회, 시·도지부(10개부), 해외지부(2개)	본회, 시도지부(3개)
회원수	정회원(건축사) : 8,083명('09.9월기준)	정회원(건축사, 건축관련종사자 등) : 2,979명('09.9월기준) ☞ 건축사 1,393명	정회원(건축사, 교수 등) : 1,018명('09.9월 기준) ☞ 건축사 662명

나. 통합방침

- 대한건축사협회 : · '대한민국건축사협회' 로 명칭변경
· 현행 정관 개정추진
-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 법인청산을 추진하며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 귀속

다. 단체통합 관련 주요 추진경과

- '06.~'07. 건축단체 통합교류 및 통합에 관한 논의
- 회의 등 9회 개최
- '07.12.14 건축단체통합에 관한 기본사항에 합의(FIKA 송년회)
- 단체통합 논의를 위한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구성
- '07.12.18 2007년도 제12회 이사회 개최
-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기본합의사항에 대하여 추인키로 의결하고, 건축사통합혁신위원회 위원(5인)선임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위원 5인 선임(백민석, 송평문, 심재호, 전영철, 조충기)
- '08.01.03~'09.01.20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개최 (31회)
- '08.01.11 2008년도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개최
- 건축단체통합에 관한 기본 합의 사항을 추인하고, 통합의 방법, 시기, 명칭 등에 대해서는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함.
- '08.02.21 건축단체통합 협약서 체결
- '08.6.30까지 '통합건축사협회' 설립 추진
- '08.06.12 2008년도 제4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개최
- '통합대한건축사협회' 명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에 임하기로 하고, 명칭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함.

- '08.06.17 2008년도 제6회 이사회 개최
 - 단체통합대표자회의에 참석할 본협회 대표위원 10인을 아래와 같이 구성키로 하고, 각 위원에게 그간의 경과를 알려주기로 함.
 - 회장, 고문(김영수), 부회장(송평문)
 - 이사 5인(전영철, 백민석, 심재호, 장양순, 조충기)
 - 시·도건축사회 회장 2인(강희달, 박대용)

- '08.07.10~'09.2.9 통합건축사협회 대표자회의 개최(3회)

- '08.07.15 2008년도 제7회 이사회 개최
 - 단체통합에 대한 문제는 협회 위원들 간에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우선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08.09.09~'09.01.19 단체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10회)

- '08.09.25 2008년도 제5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개최
 - 단체통합 간담회('08.9.24)에서 논의한 대표자회의 상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 결과를 타 단체와 조율한 후 통합건축사협회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1) 통합되는 협회의 명칭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함.
 - 2) 정관(안) 및 통합일정(안)은 통합건축사협회대표자회의준비위원회에서 작성
 - 3) 각 단체는 2008년도 11월 말까지 정관(안) 및 통합일정(안)을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2009년 2월말까지 총회를 통하여 의결
 - 4) 등록원은 건축사협회 주체로 운영 또는 등 조항 삭제
 - 5) 통합 이전까지 각 단체에서 주치(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

- '08.09.29~'09.02.02 총무기획분과회의 개최 (11회)

- '08.10.17~12.24 정관소위원회 개최 (5회)

- '08.12.16 2008년도 제12회 이사회 개최
 - 통합 정관(안)에 대하여 단체 간 합의가 되면, 우리 협회 10인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09.01.13 2009년도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개최
 - 통합정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수정·보완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09.01.20 2009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 통합 정관(안)중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의 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협의함.

- '09.02.10 2009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
 - 단체통합 및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제43회 정기총회에 상정하되, 내용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나 어휘 등을 이사 2인(조충기, 전영철)이 수정·보완하기로 함.

- '09.02.25 단체 통합 및 정관 개정 승인 (제43회 정기총회)

- '09.03.10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승인 (제3회 이사회)

'09.05.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 결과 : 주무관청으로 동시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
- ※ '09.8.4 주무관청 동시등록에 대한 동의공문 회신(문광부→가협회)

'09.06.02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 결과 : 주무관청으로 동시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
- ※ '09.8.17 주무관청 동시등록에 대한 동의공문 회신(국토부 → 본협회)

'09.08.07

통합 정관(안)에 대한 단체장 합의

- 제1조(명칭) :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 건축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 부칙 : 국토해양부 장관 → 주무부처 장관

라. 대표자회의 및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명단

□ 대표자 회의

□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소속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대한 건축사 협회	회 장	한명수	(주)에도 건축사사무소
	고 문	김영수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	류춘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상근이사	전영철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이 사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심재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장양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조충기	건축사사무소 간향
서울회장	강희달	제이 건축사사무소	
충북회장	박대웅	(유)에가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 건축사 협회	회 장	김창수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예회장	윤석우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	이상림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성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 사	이정호	경북대 건축과
		강철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곽재환	(주)칸 건축사사무소
		이관직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조익수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지회장	허등윤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새 건축사 협 의 회	회 장	이필훈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임회장	최관영	(주)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부회장	김용미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상훈	(주)향도시 건축사사무소
	이 사	함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권문성	(주)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십칠
		이충기	(주)한메 건축사사무소
		최동규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감 사	정현화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상임위원	안우성	HNA 온고당 건축사사무소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소속
위원장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위 원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대한 건축사 협회
	송평문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심재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전영철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조충기	건축사사무소 간향	한국 건축사 협회
	강철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김병윤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곽재환	(주)칸 건축사사무소	
김홍수	해안 건축사사무소	새 건축사 협 의 회	
이관직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조익수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권문성	(주)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십칠		
김용미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새 건축사 협 의 회	
이충기	(주)한메 건축사사무소		
조상훈	(주)향도시 건축사사무소		
함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조충기 위원은 중도 사퇴

단체 통합에 관한 글 모음

<p>계재 순서</p>	• 건축3단체 통합에 즈음하여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새 희망과 새 바람을 일으킬 것!	건축문화신문 28호(2007년 12월 16일자)
	• 통합에 즈음하여	한영수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 건축사 단체 통합은 사건이 아닌 의문	본지 484호(2009년 8월호) *해당호 참조
	• 건축사 단체 통합은 사건이 아닌 의문	이필훈 새건축사협회의 회장
	• 건축사 단체 통합은 사건이 아닌 의문	건축문화신문 28호(2007년 12월 16일자)
	• 건축실계관련 3단체 통합의 과정	김광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할 때"	건축문화신문 64호(2009년 6월 16일자)
	• 대한민국건축사협회(KIA)의 출범을 앞두고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 400년의 송사	건축문화신문 70호(2009년 9월 16일자)
	• "건축 3 단체 통합의 변수"	신춘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본지 482호(2009년 6월호) *해당호 참조
	곽재환 한국건축가협회 통합추진위원장	
	박재용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부산 건축사신문(2009년 6월)	
	이봉춘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건축3단체 통합에 즈음하여- 어렵지만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김영수

건축 관련 단체 통합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 건축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던 지난 1998년에 건축3단체 통합을 위한 원로모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때의 3단체는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찬성이었고, 우선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가 먼저 통합하고 다음에 건축학회와 통합하는 절차에 대해 6인소위원회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건축학대신에 새건축사협회의가 자리했습니다.

새건협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에 대한 합의가 무르익은 시점에 새삼스레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시지탄이나마 건축가협회와의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개(家) 아닌 새(士)로의 통합은 사실상 성사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성한 직업명은 건축사(建築士)입니다.

건축가(家)와의 혼동과 충돌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은 것도 사실입니다.

산적한 현안들은 갈래가 아닌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해결은 빨라 집니다.

안으로는 생업과 불황 등 혁명적인 건축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밖으로는 국제적인 무한경쟁에 재빨리 대처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조국통일이 당연하듯 적어도 家와 士와의 단체통합은 숙명이고 필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뚫고 뚫어 겨우 통합의 물꼬는 터놓은 상태 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적지 않은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단체별 정체성과 활동영역 그리고 회원의 구성여건과 사고방식 등에서, 하나가 되기까지는 또 다른 설득논리와 실천의지가 그 관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솔직히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건축사협회 회원의 설득과 동의를 얻는 일입니다.

그간 통합의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통합절차에 대한 이해와 논의 과정이 생략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임시총회까지 연기된 마당에 집행부의 설득노력이 여기에 총집중되지 않고서는 총회의 통과를 장담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회원의 절대적 동의 없는 통합의 의미 물론 물어볼 가치조차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통합문제는 현재의 우리 건축사 들을 위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미래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배 건축인 들의 공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자는 뜻입니다.

차체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관련 단체의 임원들께서는 결자해지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양보를 계속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산하 회원들께서는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어주시고 현실적 쟁점과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과 질책을 끝까지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뜨거워 질대로 뜨거워진 감자와 같은 통합숙제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뜨겁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혀서라도 꼭 먹어야만 하는 우리의 비상식량과도 같습니다.

건축과 건축사의 장래가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위상이 또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새 희망과 새 바람 일으킬 것!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한 명수

2007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큰 기쁨을 감출 수 없기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22일 국회에서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14일 FKA 즉, 한국건축단체연합 송년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등 건축사 3단체가 통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우리 건축계 내부의 숨겨진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사건인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창립에 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6개월 만에 맞는 경사입니다. 과거 우리건축계는 어려운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개인과 집단별로 각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가당착에 빠져 온 우리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결과 3단체가 통합을 선언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사)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사)새건축사협의회는 그 동안 10차례가 넘는 실무대표 회의를 거쳐 건축계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건축계의 진정한 통합은 물론이고, 건축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라면 회장 자리라도 던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저는 이번 통합의 선언이 건축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들의 뜨거운 가슴의 열정은 바뀌어가는 시대를 직시하여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분열된 모습으로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서로가 혼연일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찬란한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취임 시부터 추진해 왔던 건축계의 화합과 단합은 이제 싹을 틔우고 잘 자라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가 잘 자라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 되기로 한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건축계에 새 희망과 새 바람을 일으키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건축사로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을 때가 다시 올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건축사들의 밝은 미래와 생존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뛰고 또 뛸 것입니다. 허울 좋은 말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오히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구체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건축사 3단체의 통합에 결단과 합의를 해주신 (사)한국건축가협회 변용 회장님과 (사)새건축사협의회 이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원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건축사 단체 통합은 사건이 아닌 의무!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 광 현

지난 12월 14일 FKA 송년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3개 건축사 단체 실무위원이 모여 통합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이를 중재한 이로서, 이 단체들의 통합만이 우리 건축의 미래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모인 이 회의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각 단체마다 사정이 있고, 조건이 있겠지만, 필자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전제 조건을 거는 것이었다. 설게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체의 대지를 관망하고 인간이 쓰고자 하는 바를 크게 읽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도 그 사고처럼 커다란 관망이 먼저 있고, 디테일은 나중에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건축사 3개 단체가 건축사법 개정 이전까지 통

합한다는 그날의 합의문이었다.

필자는 왜 세 건축사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통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따로 말해야 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것은 이미 이 세 단체의 통합은 오래 전에 이루어져야 했을 문제이고,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이미우리 각자 안에 다 있다. 이 세 단체의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제일 먼저 역설한 것은 2년 전 한국건축가협회 변용 회장이었다. 그때 변 회장은 필자의 주장에 매우 신중했지만, 마음에 새기는 듯 한 느낌을 표정에 서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고맙게도 한 명수 회장은 당선한 후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필자를 제일 먼저 만나 주었다. 그런 한 회장에게 필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해야 할 제일 큰일은 건축사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말부터 꺼냈다. 마음이 급했던 것 같다. 이

번의 건축사법 개정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련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한 것은 이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란 이미 건축사 면허를 획득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저 미래의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이 그 한가운데 있다. 이제까지 너무 긴 시간을 이 '건축사등록원'의 설립 주제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건축사등록원'과 통합된 새로운 건축사협회는 피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의의 결말은 결국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건축의 미래, 한국건축의 미래를 여는 저 학생들의 미래는 바로 이 점, 통합된 새로운 건축사협회가 성립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건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이는 부디 이 결론을 가볍게 보거나, 정략적으로 이해하거나, 한 교수의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나, 그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많이 들어 왔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그럴만한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으며, 어떠한 명분도 달리설립하지 않는다. 건축사법 개정 이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짧은 문장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처럼 그냥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으며 또 추진될 리가 없다. 협회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미룰 수가 없는 것은 이미 건축사등록원 설립이 늦어 버렸고, 이 때문에 이미 5년제 대학졸업자는 실무수련에 등재 과정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엄격한 인증 실사는 진행되고 있고, 대학은 이에 열중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말이다. 만일 이 새 건축사법이 지연된다면,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기간에 가까운 일인가? 대학은 이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내부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이 사회가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나라에서 건축사협회는 두 개일 수는 없다. 새 건축사법은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건축사를 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협회가 두 개라는 것은 건축사가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국제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리고 설립되어야 할 건축사등록원의 업무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건축사협회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문제는 각 단체의 의지에 와 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는 협회 회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이가 이 세 단체를 존중하는 것은 협회의 문제가 곧 건축계를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협회가 오늘날 건축계의 문제를 미래에 펼쳐 놓고 생각하지 않거나, 협회 이기주의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협회를 벗어난 다른 건축하는 이들의 이해를 결코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새 장이 열리려고 한다. 부디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전통도 이 건축사 단체의 새로운 통합을 방해하지말기를 바란다. 통합될 새로운 건축사협회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건축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공부하는 학생을 기억하고, 또 이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로이 통합된 건축사단체에서 이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되기를 그리며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건축사라는 직업을, 건축사를 지망하는 학생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이 사회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게 될 새로운 건축사협회로 통합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 건축사 단체의 통합은 사건이 아니라 의무다.

□ 2009년 6월 16일(64호-칼럼) 건축문화신문 기고 글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과정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전 영철

지난 5월 21일 한국건축가협회의 임시총회에서 통합정관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건축설계관련 3단체의 통합은 본격적인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는 지난 2월에 정기총회를 통하여 통합정관을 승인하였으나 한국건축가협회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뒤늦게 통과시킨 것이다. 유감스러운 점은 통합정관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통합3단체의 대표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일부분 변경시켰다는 점이다. 정관 제1조에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을 삭제하고, 각 조문에 나타난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수정시킨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해양부 소속이며 한국건축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니 양 부처에 공동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사실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건축사협회가 양 부처에 등록을 하여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의 정체성을 표현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이라는 문장을 삭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물꼬는 2005년도부터 활동하던 건축문화포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3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던 모임이었다. 당연히 건축설계단체들의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비공식 통합모임이 계속되었지만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와의 통합 무산, 한국건축사협회 창립발기인 대회 등이 발표되면서 건축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였다. 결국 매주 한 번씩 새벽에 교대역

부근의 곰탕과 역삼동의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며 가졌던 20여회의 모임은 서로간의 의견대립만 확인한 모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에 건축사법 개정(안)합의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김 광현교수 주재로 다시 모인 각 단체 대표들은 등록원 설립 등 건축사협회에 대한 견제적인 이견이 표출되었으나 단체통합의 조건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 건축사법 개정을 빌미로 다시 통합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 불씨는 2007년도 FIKAS년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한 명수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의 변 용 회장, 새건축사협회의 이필훈 회장이 3단체 통합 추진합의서를 작성, 서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각 단체대표 5명씩으로 구성하는 건축통합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통합준비를 시작하였고 2008년 2월21일 한국건축가협회장 이 취임식에서 건축단체통합합의서를 체결하였다. 3단체를 대표한 건축통합혁신위원회의 모임은 60여회에 달 하였다. 각 협회입장을 대변하며 설득하고 무수한 토의와 언쟁 끝에 합의된 의견을 만들었으나 각 단체 내

에서의 보고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하기 일쑤였다. 이에 3단체대표들은 합의된 의견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3단체를 대표한 의결기구 구성에 합의하였다. 회장, 고문, 부회장 및 임원을 포함한 대표단 30명으로 구성된 통합건축사협회 창립준비 대표자회의는 이렇게 탄생하였고 2009년 2월9일의 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통합정관(안)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제 3단체는 총회를 통하여 통합정관을 통과시켰으나 통합창립총회를 위한 통합창립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통합건축사협회의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시등록은 양 부처의 이해로 해결될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합의된 정관내용의 변경에 대한 해결여부는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지금의 우리를 위함이 아닌 미래 건축계 후진들을 위한 따뜻함이 요구된다. 서로의 이해 속에 모든 이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통합된 대한민국의 건축사협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09년 9월 16일자(70호-삶과일터사이) 건축문화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할 때”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신춘규

요즘 건축 3단체의 통합문제로 한창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본 협회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이 문제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통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협회는 1965년에 법적 단체로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의무가입단체로서 편안하게 협회의 입지를 굳혀왔으나 얼마 전 임의 단체로 전락되고 난 이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들이 건축설계업무 대가의 폐지, 설계 겸업의 허용, 건축사 사무소 명칭 사용의무화 폐지, 설계 감리 업무의 분리 등으로 볼 수가 있다. 다 우리의 업역을 위협함과 동시에 건축문화를 말살하려는 모종의 조치로 보여진다.

이미 45년 동안 제도권 아래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제재를 역으로 당하기도 해왔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된 지금이나 과거를 보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꼴이 되었다. 소위 건축전문가라는 우리들이 경제부흥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하는 정책기조에 일조를 해왔고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개발이나 후손들에게 어떠한 건축/도시 문화를 남겨주어야 하는가를 논하기도 전에 건설정책의 하수인이 되어 온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건축전문인이고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전문가이니 존경해달라고 한들 누구하나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가 건축사 명칭법에 도시를 만드는 전문가 중의 주요 전문가로서 건축전문가 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과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선배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현실이다. 그래서 협회를 대표하여 오랫동안 협회 정책의 중심에 있던 직전회장이 재직 시 이 한계를 심히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정권으로 바뀌고 정부기관 개편이 있을 때 지식경제부로 갈아타겠다고 아우성쳤을 때가 있었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가협회가 가입되어 있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당시 협회 이사들과 논의를 거쳐 상정했으나 정부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기회가 왔다. 2007년부터 초석을 다져온 통합이 무르익을 때가 되었다. 많은 고생들이 있었다. 통합을 위한 시간적 소모와 열정의 소모 등... 이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 통합이 되면 분열되었던 건축전문인들의 목소리가 통합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를 참석했을 때 15만명의 건축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창피이겠는가?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의 상황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3단체로 있으면서 얼마나 다른 목소리를 냈던 우리들인가? 서로의 무능함을 탓하는 사이 제도권 인사들에게 서로의 눈치를 보며 피해가는 길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고 본다. 통합이 가능하다면 문화관광부에도 중복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거가 있고 없음을 떠나 법정단체로서 문광부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법적 근거는 국토해양부에, 활동 근거는 문화관광부에 둬서 우리의 활동범위를 문화적으로 굳혀 나

간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건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화뿐이 없다고 믿는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각론에 대한 것은 엄중히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고 협의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기존 제도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본다. 기존의 제도로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면 과감히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발전은 개혁과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밝은 미래에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건전한 논쟁을 벌이고 조금의 차라도 다수결이 되어 의결이 난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400년의 송사



경북건축사회 회장 박재웅

안동에서 400년의 송사가 얼마 전 양측의 화해로 막을 내렸다. 학봉(김성일)과 서애(류성룡)선생의 위패 자리를 놓고(의전서열) 400년 이상을 후손들이 다투었으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길이 남을 사건이다. 무엇 때문에 그리 집착하였는지는 알겠으나 형식에 대한 집착은 본질을 흐리고 다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모적 행위가 될 뿐이다.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편법과 폐법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혈통을 이어 받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형식이 본질을 지배한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을 희망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참다운 문화를 한국에서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건축3단체 통합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통합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형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형식이 본질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이다. 집행부에서도 왜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통합의 목표는 건축사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통합이라는 변화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상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살기 어려우니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이 회원들의 갈망을 지도부는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에 건축사협회는 추락하는 우리의 권익을 반전시킬 여력도 노력도 없었다. 법개정, 건축인증원, 입찰제도, 감리대가, 설계·감리 분리, 유사명칭사용, 비건축사에게 법인소유 허용 등 수많은 밀려오는 파고를 이겨내지 못하여 건축사의 위상은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파괴되어 왔고,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분산된 건축인의 힘을 하나로 합쳐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자는 통합에 대한 고민이 과거부터 있어왔고, 지난 회기의 집행부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 성과를 도출하였다. <변화하지 못하는 집단은 도태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3단체 통합선언을 이끌어낸 직전 집행부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낸다.

형식이 다소 바뀌어도 통합이라는 본질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선배 회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 집행부에서 과거의 노력을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한다. 희망의 꿈을 버려놓고 송사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 부산 건축사신문 2009년 6월 기고 글

‘건축 3 단체’ 통합의 변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이봉준

지난 5월 21일, 가는 봄이 아쉬웠던가, 하필이면 진중일 굿은비가 내리던 그날, '2009한국건축가협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비록 서울 외곽 모 건설업체 '전시 갤러리'였지만, 이날 상정된 안건안은 정말 중요했다. 건축 3단체 즉,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를 하나로 묶는 합의안과 '통합정관'을 의제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50여년 전통의 협회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지 모를 현안 중 현안인 것이다. 물론 "통합을 통해 새롭게 거듭 난다"

할 수도 있고, 또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문을 닫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청산(해산) 총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 및 통합 합의서 승인의 건'이라는 안건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총회가 통합으로 가는 결정적 수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합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 순간임엔 틀림이 없다. 그래서일까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가라앉고 무거웠다.

생각하면 그도 그럴 것이, 벌써 2005년 7월부터 '단체 통합 관련 워크숍'을 시작으로, 그 동안 수많은 논의 속에 '결의와 무산'을 반복하는 우여 곡절을 겪었다.

게다가 지난 2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가 각각의 정기 총회에서 이미 합의안을 원안 통과 시킨 바 있다. 따라서 '가협회'로써는 달리 해 볼 방도가 별로 없다. 그게 '통합추진혁신위원회' 및 집행부의 딜레마다. 자칫 잘못 했다간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대내외적인 원성과 책임 또한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게다가 향후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벌써 일부에선 집행부의 행적(行迹)을 탓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회의는 순조롭지 못했다.

출석 회원 170여명과 위임장 500여장을 합하여 정회원 수의 1/4인 정족수는 가까스로 넘겼으나, "과연 이정도의 참석 회원으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타와 함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제안 설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 '통합정관' 내용 및 '가협회' 법인 청산 등에서 볼 때, '사협회'에 편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흡수 되는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느냐, 안된다면 유사 타 단체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 두 부처에 동시 등록은 가능한가? ▲ 가치 단체인 '가협회'와 이익 단체인 '사협회'의 통합이 과연 정체성에 맞느냐? ▲ '대한건축학회'가 빠졌는데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 현재의 FICA 체제로 단체 연합은 불가능한가? 등이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라는 명칭 문제, '통합정관'상 정회원을 건축사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분 한 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유지 문제와 교수 및 비 건축사 회원의 이탈 움직임 등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에 집행부는 뚜렷한 있는 해답을 내 놓지 못했다. 세계화의 시대적 환경 변화, 건축 문화의 항구적인 발전, 건축계의 권익 보호 등 상투적이고 원론적이었으며,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를 위한다"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완하겠다, 잘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등의 막연하며 안일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지방 회원

을 중심으로 원천 무효 주장 등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찬반토론 끝에 '통합정관'에 대한 수정안이 대안으로 제시 되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명칭) 우리 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건축사협회 (이하 "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약칭 KIA)라 한다'에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를 삭제하고, 부칙 내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일부에선 집행부가 파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라는 설이 있지만 아무튼 당초 3차 합의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집행부와 추진위원회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과 이해를 구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총회 절차를 걸쳐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제 다시 공은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회'로 넘어 갔다. 각 단체가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한건축사협회'로써는 국토해양부와 건축사법의 근거를 배제한다면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어차피 건축사협회도 임시총회가 불가피 해졌다. 그러나 이젠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무(無)에서의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통합'이다. 이는 기득권 및 구성원간 이해득실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惡)인양하며 도외시 할 순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다수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다. 그래서 어렵다. 선불리 명분만 앞세운 통합, 오로지 통합만이 선(善)인양 하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안 된다. 또다시 분란과 분열로 이어질게 뻔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 삶의 역사가 통합과 분열의 반복"이라며, "일단 해 놓고 보자"라는 식인데 결코 안 된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고, 그로 인한 손실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단체 통합에 관한 Q&A

1. 총론에 관한 사항

1-1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

건축사협회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서 권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계의 모습은 사분오열되어 법제도 개선 시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여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등록원 등 건축사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건축 관련 제도개선에서 건축계가 정부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단체가 아닌 복합단체로서 국내건축계의 분열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으며 각종 국내행사들도 비슷한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건축계가 통합되어 큰 단체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통일된 모습으로 쇄신하여 국내외의 신뢰를 쌓아 미래건축계 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험입니다.

1-2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서로의 활동영역과 정체성이 다른데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협회는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건축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사들의 업무영역 확보와 권익 보호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는 건축학과 교수들과 함께 건축의 예술성, 문화성을 전시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활동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라는 명칭보다는 건축가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더욱 예술적이고 작가적이며 건축설계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인식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사는 행정 처리만을 하는 건축의 행정서사 역할을 한다는 인상이 강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은 하루빨리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수많은 세월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의 해법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여 법제 활동과 예술 활동, 문화 활동을 건축사협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우리회원의 입장으로 하게 될 것이며,

건축사가 바로 건축가라는 인식을 단숨에 국민들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활동영역과 정체성이 달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의 정체성과 활동영역을 건축사협회의 영역으로 합쳐서 건축계의 모든 역량을 건축사협회 하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합의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1-3 통합할 경우 우리 협회는 어떻게 바뀌며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회의는 법인청산을 하게 되는가?

우리 협회는 명칭을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개명하여 명실상부한 건축설계업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건축가협회도 정관을 우리정관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법인은 우리 법인으로 대체되며 같은 명칭으로 변한 한국건축가협회의 기존 법인체는 청산될 것입니다. 또한 새건축사협회의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흡수되며 법인체는 청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회의의 모든 재산과 행사의 권리 등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1-4 지금 통합을 위하여 추가로 임시총회를 해야 하는 원인은 건축가협회가 지난 임시총회에서 우리협회와 합의된 정관을 변경하여 통과시킨 결과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임시총회를 하여 수정 합의한 내용을 통과시킨다 하여도 건축가협회가 지난번처럼 변경하여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건축가협회는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건축가협회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득권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어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 라고 판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법인등록이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 모두 가능할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국내 역사상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협회의 정관내용 일부 변경의 의미는 바로 양 부처의 동시등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양 부처 장관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 내용이 건축가협회회원 모두에게 전달되었기에 다시 수정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건축가협회 임원들의 예상입니다.

1-5 본래 통합문제는 건축사등록원을 협회가 설립하는 것을 합의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지 말고 건축사법의 개정 내용 중 건축사등록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건축사등록원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통합의 모티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 건축계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등록원의 문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의 이유가 등록원 설립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등록원 문제와 같이 항상 건축계의 의견이 각 협회의 입장으로 인하여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하나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전제로 등록원을 건축사협회가 설립한다 라고 합의를 보았지만 정부는 별도의 독립된 등록원이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록원 대부분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위임 하겠다고 합의된 것이 현재의 건축사법개정안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통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계 내부에서 다시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므로 그나마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내용들마저도 위임하지 못 한다 라는 결과가 나올까하는 걱정입니다. 등록원은 건축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운영의 주체는 건축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등록원이 그렇고 영국의 등록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사협회가 등록원을 운영하려면 건축계가 정부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를 위해서는 통합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통합을 통하여 정부에 건축계의 통일된 의견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은 정부와 건축계에 선언된 공식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최소한 건축가 협회의 정기총회인 12월 초까지는 통합총회 또는 통합대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통합선언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전에 그런 행사가 확정되지 않으면 건축가협회는 다시 차기회장을 비롯한 임원개선을 해야 하며 우리협회가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빌미를 주어 통합의 모든 노력이 깨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2010년 3월1일부터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시작되므로 양 부처의 승인 등 각종 절차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 통합이 되더라도 건축사 아닌 사람들이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기존 건축가협회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면 결국 통합의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닌가?

많은 회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중심의 협회가 되면 건축사가 아닌 분 들이 소외감을 느껴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사 아닌 회원들, 특히 건축학과 교수들과의 공존을 위함이 통합의 큰 목표중의 하나이므로 그렇게 협회의 운영이 일반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의 이유로 새로 생길 수 있는 건축단체가 아무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등록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이므로 추가의 건축관련 법인설립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 둘째, 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에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등록되므로 예총의 모든 지원이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될 것이며 다른 건축단체로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 셋째,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던 대한민국건축대전을 비롯한 모든 건축관련행사 및 지원금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승계하므로 건축계의 분열을 가시화시키며 새로 시작하는 건축단체가 건축계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1-7 통합할 경우 우리 협회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통합될 경우에 타 단체 회원들과 같은 회원이 되니, 우리 재산의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첫째, 우리 협회의 기금 또는 부동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다수인 우리 협회 대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협회에 불리한 결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둘째, 기존회원에게 적용되는 폐업위로금 등은 타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셋째, 우리 협회와 같은 비영리 특수법인인 경우 재산을 해체하여 회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통합이 될 경우, 우리 협회의 정회원 수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현재 통합될 3단체의 회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나 건축사 아닌 특별회원의 경우 회비납부의 의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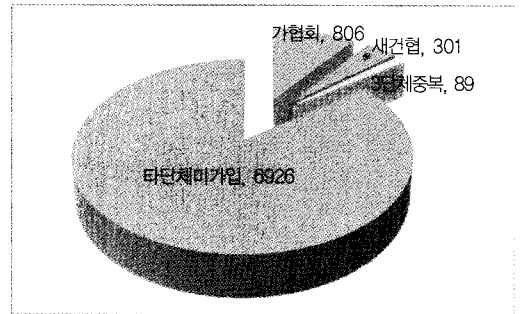
회원은 준회원격인 전문회원으로의 변경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축사단체 회원 중 건축사 현황

- 대한건축사협회 : 8,083명 (' 09.9월 현재)
- 한국건축가협회 : 2,979명 중 1,393명, 비건축사 1,586명 (' 09.9월 현재)
- 새건축사협의회 : 1,018명 중 662명, 비건축사 356명 (' 09.9월 현재)

□ 우리협회 회원 중 타단체 가입현황

- 한국건축가협회 가입자 : 806명(10%)
 - 건축사 회원 중 나머지 587명은 우리 협회 회원이 아님
- 새건축사협의회 가입자 : 301명(3.7%)
 - 건축사 회원 중 나머지 361명은 우리 협회 회원이 아님
- 가협회+새건협 가입자 : 89명(1.1%)
- 타단체 미가입자 : 6,926명(86.2%)
 - * 가협회+새건협 가입자 : 78명(우리 협회 회원이 아님)



□ 단체통합 후 정회원 수 예상통계 : 10,823명 (8,903명+1,920명)

- 건축사회원 : 8,903명(8,033명+870명) • 특별회원 : 1,920명

※ 건축사회원 계산과정

- 한국건축가협회 가입자 : 806명 ① : 1,393명 - 806명 = 587명(미가입자)
- 새건축사협의회 가입자 : 301명 ② : 662명 - 301명 = 361명(미가입자)
- 우리 협회 미가입자 중 가협회 회원과 새건협 회원 중복가입자 ③78명



∴ ①(587명) + ②(361명) - ③(78명) = 870명
 ∴ 8,033명 + 870명 = 8,903명

※ 특별회원 계산과정

- 한국건축가협회 비건축사 : 1,586명 ① • 새건축사협의회 비건축사 : 356명 ② • 가협회+새건협 중복가입 비건축사 : 22명 ③
- ∴ ①+②-③= 1,920명

교수 약 600여명, 건축사사무소 근무자 550여명, 명단만 기재된 사망자를 포함한 비활동회원을 제외하면 인테리어, 건설사 등의 인원은 극소수일 것으로 추산됨.

※ 타단체 회원의 건축사여부 확인방법

- 타단체에서 보낸 준 회원명부와 우리 협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자료를 비교 검토함.
-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건축사자격 소지자로 보고한 사람 중 일부는 외국건축사자격 소지자로 확인됨.

1-9 통합되면 타 단체 회원들이 입회비를 내고 들어오는가?

타 단체 회원들 중에 우리 협회 회원과 중복되지 않은 회원들은 입회비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입회비를 내야 한다면 통합이 아니겠지요. 단체와 단체 간의 통합절차이므로 입회비는 없는 것이 맞다는 것이 통합위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1-10 통합되면 건축사 아닌 회원들이 대한건축사협회에 강한 영향력을 주어 건축사단체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지 않은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의원 절대다수가 협회회원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건축사 아닌 회원들은 회비납부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준회원 성격인 전문회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에 건축사 아닌 사람들의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

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닐 경우 회원으로의 입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건축사 아닌 자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비하여 건축사들은 현재의 비회원 건축사들을 비롯하여 새로 합격되는 건축사들의 입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건축사 아닌 회원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 통합되면 건축사 아닌 회원들도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아닌 자들이 건축사 업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 아닌 사람들이 협회 회원이 되었다하여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은 현행 건축사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있을 수 없는 오해입니다.

1-12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협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됩니다. 예상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와 건축계로부터 신뢰도가 땅에 떨어 질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불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축사협회보다 신설되는 등록원에 더 중점을 둔 정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사시험 등 기존 위탁업무가 등록원으로 이전 될 가능성과 앞으로 모든 등록원 업무 등의 위탁에서 건축사협회가 배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축계에서의 건축사협회 힘이 점차로 약화되어 법과 제도 개선, 각종 심사위원의 위촉 등 건축계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제2의 건축사협회 설립추진이 재론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2. 통합정관(안)에 관한 사항

2-1 당초의 국토해양부 장관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바꾼 이유는?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무부처장관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여 지금껏 지방건축문화제 등의 건축문화 예술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건축문화진흥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가협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의 기득권을 승계하는 것이 건축계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통합대상 단체장들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담을 통하여 두 부처에 동시 등록하는 것을 구두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공문으로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건축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바꾼 것입니다.

2-2 건축사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현행 건축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가?

※ 현행 건축사법상 협회의 정회원은 개업 건축사만 해당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사법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회원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건축사법 개정을 조건으로 한 정관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자문완료)

2-3 정관(안) 제7조에서 별도의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협회에서 별도의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건축문화재단', '친환경 건축연구원' 과 현재까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는 일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별도의 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한 것입니다.

2-4 이사가 최대 55명인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지?

3개의 단체가 통합되는 만큼 이사 수의 증가는 필요하며, 우리 협회와 비슷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협회와 비교해 볼 때 이사 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협회는 상임이사회의 신설로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상임이사회는 현재의 이사회로, 전체 이사회는 현재의 임원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와 비슷한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통합 회원 수 약 10,000명 (이사 수 : 55명, 상임이사 수 : 15명)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수 : 9,208명 (이사 수 : 50명, 상임이사 수 : 10명)

2-5 정관이 개정될 경우, 대의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인가?

현재는 대의원이 회원 20명을 대표하지만 개정안은 30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대표하는 2011년 대의원 수는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하여 약 481명으로 추정(아래 참고자료 참조)되며, 2012년 이후 부터는 47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당연직 대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20명을 대표한 현재의 대의원 숫자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1년 대의원수 : 481

- 당연직 대의원 : 149명
 - 명예회장 28명 (사협회 : 10명, 가협회 : 14명, 새건협 : 1명)
 - 현직 및 직전임원 121명 (현직 : 55명, 직전 : 66명)
- 선출직 대의원 : 332명(통합 후 정회원수 기준)

2012년 이후 총대의원 수 : 470명

- 당연직 대의원 : 138명
 - 명예회장 28명 (사협회 : 11명, 가협회 : 15명, 새건협 : 2명)
 - 현직 및 직전임원 110명 (현직 : 55명, 직전 : 55명)
- 선출직 대의원 : 332명(통합 후 정회원수 기준)

2-6 가부 동수인 경우에 부결로 처리할 경우, 사업예산 집행 등 협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과반수 가결의 의미가 이미 가부동수는 부결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설명이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3. 통합이행 · 운영규정(안)에 관한 사항

3-1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의 대표단이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으로서 과도기간 1년(2010년3월1일~2011년2월28일)의 한시적 규정이며 1년의 예비기간을 통하여 예산, 사업집행 등의 교류 및 협력 체제를 통하여 완전히 통합된 이후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2 당초의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과는 달리 통합총회를 통합대회로, 청산절차에 정관개정을 포함하여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임원선출을 임원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부분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합의과정이 짧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내용 이외에 아래와 같은 일부내용의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통합총회는 예산, 사업 등의 의결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나 실제적으로는 통합을 외부에 알리는 행사이므로 총회의 명칭보다는 대회의 명칭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따라서 대회에서 임원선출은 어울리지 않으니 당초 규정이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추천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한국건축가협회의 청산을 정관개정을 통하여도 할 수 있도록 안을 잡은 것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정관개정을 하여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되어도 좋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이 있었기에 정관개정을 추가한 것이지 한국건축가협회의 법인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회장의 결재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각 단체의 예산과 사업의 독립적 의미를 확실히 하여 각 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과 예산 집행하는 것을 명문화되 중복사업, 국제행사 등은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의 추가변경이 본래의 통합합의 내용을 변질시켰다는 등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6월 이전을 6월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불가피한 내용만을 수정하도록 타 단체들의 양해를 받아 놓았습니다.

3-3 앞으로 통합이행규정 및 운영규정을 우리 협회 입장에서 수정변경이 가능한지?

수정은 하더라도 각 단체와 협의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입장에 맞추어 수정을 하는 내용이 각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일방적인 협회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해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관 개정(안)이 승인되기 이전에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이 시행될 수 있는지?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원칙적으로 정관의 발효일과 같으나, 다만 정관발효일 이전에 준비해야 할 통합총회 등의 사전 준비내용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5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2년)를 하위규정인 '통합이행 및 운영 규정'에서 '11.2.28까지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정관에서 위임받았고, 정관에 구체적인 통합원년의 기간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 (가칭)통합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하는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 통합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임기 개시일은 언제인지?
- 법인 등기부상의 이사로 등재해야 하는지? 등재 시점은?
 - ※ 정관 시행일('10.3.1) 이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등재해야 함.

통합총회 또는 통합대회는 자문 변호사의 해석대로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각 단체가 추천한 자를 통합창립총회를 통하여 형식적인 선출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서 통합원년인 과도기간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당위성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2010년 3월1일부터이지만 그 이전에 2010년의 사업계획 등의 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 명시되었습니다.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의 이사 66인에 대하여는 정관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이사이므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과도기(통합원년)임기 1년의 이사로 등재해야 할 것입니다.

3-7 통합원년 이사회와 우리 협회 이사회의 법적 지위는?

- 통합원년 이사회가 구성되면, 우리 협회 이사회는 자동 해체되는지?

통합원년의 개시일인 2010년3월1일 이전에 건축사법 개정과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승인이 된다면 우리 협회 정관이 통합정관으로 개정되는 것이므로 이사회는 통합대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 선출되는 이사로 구성되며 통합원년 이사회의 모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8 통합원년(과도체제) 이사회의 구성이 각 단체의 회원 수와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협회에 배정된 이사 숫자가 이사회의 66인중 30명, 상임이사는 15명중 6명 등으로서 과반수 이상이 타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 숫자에 대하여 단체통합을 추진한 2008년도 우리 협회 통합추진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첫째, 추진하고 있는 통합단체의 명칭은 건축사협회라는 이름이므로 한국건축가협회를 흡수 통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한국건축가협회 회원들의 우려였습니다.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2009년 정기총회의 통합정관을 통과시킬 때 의결주문에서도 흡수통합이라는 단어는 한국건축가협회의 요청에 의하여 빼겠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축가협회의 입장에서는 대등한 1:1통합이라는 식의 외형적인 모습의 명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통합을 위한 대응적인 차원에서 한국건축가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통합의 의지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필요 없었겠지만 건축계 미래를 위하여 통합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고심 끝에 양보한 것입니다.

둘째, 아울러 양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큰 이유는 통합이행규정이 1년이라는 한시적인 규정이며 실제로 각 단체들이 각각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외부행사의 조절, 국제관계에서의 단일화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권한(예산포함)이 없어서 상징성만을 가진 임원의 역할이므로 우려할 바가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9 우리 협회장의 임기가 2011년 3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건축가협회장이 대표회장이 되는 경우, 협회 운영에 관한 대표권이 모두 이양되는 것인지?

우리 협회 회장의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통합정관에 명기된 대로 2010년3월1일부터 우리 정관은 통합정관으로 변경되므로 우리 회장은 공동회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공동회장 1년의 기간 중 6개월은 대표회장이 됩니다. 통합원년은 각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고 서로간의 체제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통합원년 1년 동안의 예산, 행사 등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이름으로 되겠지만 실제운영은 각 단체가 하던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국내외 행사시 대한민국건축사협회를 대표하는 명에는 대표회장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건축가협회회장이 6개월간 대표회장이 되더라도 1년 동안의 과도체제기간에서는 협회운영권 전체가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행사에서의 대표성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4. 통합관련 자문변호사 질의내용 요약

4-1. 통합하려는 세 단체 중 한 단체가 당초 합의내용과 다르게 정관개정(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한 경우, 우리 협회 총회에서 승인한 정관 개정(안)도 효력이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

답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그 내용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자동 소멸되는 것이지만,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제43회 정기총회 조건부 승인내용

○본 정관 개정(안)은 향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며, 동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되는 조건부 승인임.

- 1)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축사법 개정(안)중 정관 관련사항이 원안대로 개정
- 2) 3단체가 서명한 합의서의 내용대로 모든 절차 이행
- 3) 정부의 정관 개정 인가

4-2. 정관 제1조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더라도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라는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인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 개정(안) 전문에 '건축사법에 의해 창립된 대한건축사협회와 두 단체의 독자적인 창립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하여 통합한 단체'로 명시

답변) 설립근거를 삭제하더라도 법인격이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통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법인들이 설립근거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3. 건축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정관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정관에 명시된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문제되지 않습니다.

4-4. 통합단체의 정관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구성 및 사업내용, 운영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별도의 창립총회 개최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법률적 의미의 창립총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개 단체의 통합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념식 형태의 (가칭)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4-5. '리' 항의 창립총회가 필요하다면, 그 구성원은 각 단체의 전체 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구성원(우리 협회: 대의원)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의원들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타 2개 단체의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에 해당하는 회원을 선정하여 참석토록 해야 합니다.

4-6. 지난 정기총회(09.2.25)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중 일부 개정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의결권 행사는 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총회개최 자체를 서면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7. 6항과 관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정관개정(안)중 근본적인 변경이 아닌 보충 수정하는 의미인 경우 전체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이후에 개정안의 효력발생요건 이행과 (가칭)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